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0재다391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재다12686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12. 24.

주 문
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.

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, 재심대상판결에 원고(재심원고)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선수

주 심 대법관 이기택

 대법관 박정화

 대법관 이흥구